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위태양 용어 정비〉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50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행위태양 용어 정비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Ⅲ. 검토의견

1. 행위태양 용어 정비

개정안은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현행	개정안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u>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u> 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u>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u> 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u>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u> 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	제40조의4(구체적 <u>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u> 제시 의무) ① ----- ----- ----- <u>유용</u> <u>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u> 을----- <u>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u> -----. -----. ② ----- ----- <u>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u> ----- ----- ----- -----. -----. ③ ----- ----- -----.

현행	개정안
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 ----- ----- -----내용·방식·형태 등----- -----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 -----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 -----. -----.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을----- -----.

현행법 제40조의4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금지¹⁾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위탁기업이 부인하는 경우 해당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 제목 및 각 항에서 사용된 용어인 ‘행위태양’의 ‘태양’은

1) 제25조(준수사항)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문맥상 ‘생긴 모습이나 형태’를 뜻하는 ‘태양(態樣)²⁾’으로 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여서 문언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입법 의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행위태양’ 용어는 현행법 및 「특허법」에서만 사용하고 있어 법률 용어로서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³⁾.

참고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법령문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태양(態樣)’의 경우 ‘형태’ 또는 ‘모습이나 형태’로 정비할 것을 권고⁴⁾하고 있음⁵⁾.

따라서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⁶⁾’으로 용어를 정

2) ‘태양’ 찾기 결과(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태양(態樣): 생긴 모습이나 형태

3)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행위태양’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751호)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개정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 2023, 부록 정비권고용어 p.73

용어	한자·원어	권고안
태양	態樣	형태, 모습이나 형태

5) ‘태양’을 법제처 권고안과 같이 ‘모습이나 형태’로 정비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으나, ‘양상’으로 정비한 법령 개정사례가 있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2021.2.3. 시행)

종전	현행
제35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이 ----- 피의자의 나이·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57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 범죄의 경중· 양상 ,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6) <입법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배타적 운영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이하 “배타적 운영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한다.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배타적 운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

비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 용어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7

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배타적 운영권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④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의 보호를 위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